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개정('22.6.10)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급여기준 개발,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질병분류 개발·관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며, 지역가입자가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고, 2022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2.8.29)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명시(안 제28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동된 것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2) 질병 분류체계 개발·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 취득일

로부터 3개월 내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함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 1) 2023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
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안 제32조, 별표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자 분류체계”를 “질병·환자 분류체계”로,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자 분류체계”를 “질병·환자 분류체계”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80”를 “75”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받을 것”을 “받거나, 해당 세대가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경우 그 대출일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또는 임차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도 이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699”을 “70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3원”을 “208.4원”으로 한다.

별표4제1호가목 중 “6억 2,722만원”을 “6억 6,199만원”으로, “95.334 + (3

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을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으로, “17,796.15”를 “18,768.1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2년 9월분부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업무) ① 법 제63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u>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u>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②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u>환자</u> 분류체계의 개발·관리의 절차·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업무) ① ----- <u>제8호</u>-----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제7호</u>----- ----- -- <u>질병·환자 분류체계</u> ----- 5. ----- <u>제7호</u>----- ----- ----- ②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u>질병·환자분류체계</u>의 개발·관리의 절차·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② ~ ⑤ (생 략)	<u>을 받을 것.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경우 그 대출일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또는 임차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도 이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u>699</u>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u>205.3원</u>으로 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 ----- ----- <u>709</u>-----. ② ----- ----- <u>208.4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